무거 비스타동원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첫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0.11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u>종합저축으로 전환</u>한 경우, 해당 주택의 <u>순위확인서</u>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66-930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10.1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비규제지역 난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재당첨제	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	90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10.11.(금)	24.10.21(월)	24.10.22.(화)	24.10.23.(수)	24.10.30.(수)	24.11.02.(토)~ 24.11.06.(수)	24.11.11.(월)~ 24.11.13.(수)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u>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계	치금 충족	1순위(6개월	가입		
세대주 요건	_	_	_	필요	_	_	_
소득 또는 자산기준	-	_	적용	_	적용	_	_

- ※ 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 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 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근인 O H	전기된 3점시 건경경험에 띄듭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1 7 6 2 1 7 11 1 1 1 1 2 6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화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dongwonapt.co.kr/mugeo/)에 공개하며, 공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화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화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0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Ⅱ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0.11.(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 (2023.10.1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4.10.21(월)	24.10.22.(화)	24.10.23.(수)	24.10.30.(수)	24.11.02.(토)~ 24.11.06.(수)	24.11.11.(월)~ 24.11.13.(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	:00 ~ 17:30) 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522-1)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 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울산광역시 남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 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안내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계약서 또한 「인지세법」 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세액: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 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 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 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

- 무거 비스타동원은 분양 상담전화(☎1566-9300) 및 공식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자,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Ⅲ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제 58230호(2024.10.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822-1번지 일원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37층 1개동, 지상 36층 2개동 총 481세대

[특별공급 269세대(기관추천특별공급 49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75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84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9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42세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2028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주택 주택	주택형 모델(전용면적기준)		주택형	주택형	AL 2] TF -1		택공급면적(1	n²)	기타	계약	세대별	*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최하충
구분 :	관리번호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면적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소계	ᅵ세대수ㅣ	우선배정 세대수		
		01	084.9967A	84A	84.9967	32.2925	117.2892	77.2957	194.5849	15.8745	68	7	11	12	3	6	39	29	2		
		02	084.9979B	84B	84.9979	34.4199	119.4178	77.2969	196.7147	15.8747	68	7	11	12	3	6	39	29	2		
민영	2024000215	03	084.9938C	84C	84.9938	33.0176	118.0114	77.2931	195.3045	15.8739	138	14	21	24	5	12	76	62	4		
원명 주택	2024000213	04	084.9958D	84D	84.9958	33.4114	118.4072	77.2950	195.7022	15.8743	138	14	21	24	5	12	76	62	4		
干 臂		05	084.9951E	84E	84.9951	34.2439	119.2390	77.2943	196.5333	15.8742	68	7	11	12	3	6	39	29	1		
		06	084.9951F	84F	84.9951	34.2685	119.2636	77.4110	196.6746	15.8742	1	_	-	_	_	_	-	1	1		
						합 계					481	49	75	84	19	42	269	212	14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084.9967A	084.9979B	084.9938C	084.9958D	084.9951E	084.9951F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84E	84F

- •84F TYPE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면의 84E-1 TYPE입니다.
- •안방(침실1), 침실2, 침실3 표현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면의 안방, 침실1, 침실2으로 표현되어있으니, 혼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기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일반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민공동시설, 전기/기계실,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은 소수점 5째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대지지분은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 방식으로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하여 면적 합산, 확정측량 등의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발생한 경우 분양 당시의 분양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또는 세대별 각종 면적, 대지지분의 5% 이내의 증감, 지적법상 허용오차 범위 내의 증감, 지적법상 축척 변경 등으로 인한 증감시에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균등 배분하였으며, 세대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와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84C	84D	84E	84F	합 계
	장애인	2	2	3	4	2	_	13
	국가유공자	1	1	2	2	1	_	7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기복무제대군인	1	1	2	2	1	_	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2	2	1	_	7
	중소기업근로자	2	2	5	4	2	_	1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1	11	21	21	11	_	75
	신혼부부 특별공급	12	12	24	24	12	_	8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3	5	5	3	_	19
생애최초 특별공급		6	6	12	12	6	_	42
	합 계	39	39	76	76	39	_	26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공급금액		계약금	計(5%)			중도금	(60%)			잔금(35%)			
		세부		해당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주택형	주택형 약식표기 동:	동호라인	동호라인	동호라인	동호라인	충수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025.06.10	2025.09.10	2025.12.10	2026.03.10	2026.09.10	2027.03.10	입주지정일
		101동	2~5층	8	381,188,000	353,412,000	734,600,000	10,000,000	26,730,000	73,460,000	73,460,000	73,460,000	73,460,000	73,460,000	73,460,000	257,110,000			
004.00074	044		6~9층	8	381,188,000	366,412,000	747,600,000	10,000,000	27,380,000	74,760,000	74,760,000	74,760,000	74,760,000	74,760,000	74,760,000	261,660,000			
084.9967A	84A	1라인	10~19층	18	381,188,000	378,412,000	759,600,000	10,000,000	27,980,000	75,960,000	75,960,000	75,960,000	75,960,000	75,960,000	75,960,000	265,860,000			
		5라인	20~36층	34	381,188,000	387,412,000	768,600,000	10,000,000	28,430,000	76,860,000	76,860,000	76,860,000	76,860,000	76,860,000	76,860,000	269,010,000			
		101동	2~5층	8	381,193,000	353,407,000	734,600,000	10,000,000	26,730,000	73,460,000	73,460,000	73,460,000	73,460,000	73,460,000	73,460,000	257,110,000			
004.0070D	84B		6~9층	8	381,193,000	366,407,000	747,600,000	10,000,000	27,380,000	74,760,000	74,760,000	74,760,000	74,760,000	74,760,000	74,760,000	261,660,000			
084.9979B	.9979B 84B	2라인,	10~19층	18	381,193,000	378,407,000	759,600,000	10,000,000	27,980,000	75,960,000	75,960,000	75,960,000	75,960,000	75,960,000	75,960,000	265,860,000			
		3라인	20~36층	34	381,193,000	386,407,000	767,600,000	10,000,000	28,380,000	76,760,000	76,760,000	76,760,000	76,760,000	76,760,000	76,760,000	268,660,000			
			2~5층	4	381,173,000	353,427,000	734,600,000	10,000,000	26,730,000	73,460,000	73,460,000	73,460,000	73,460,000	73,460,000	73,460,000	257,110,000			
	10	102동 1라인	6~9층	4	381,173,000	366,427,000	747,600,000	10,000,000	27,380,000	74,760,000	74,760,000	74,760,000	74,760,000	74,760,000	74,760,000	261,660,000			
			10~19층	9	381,173,000	378,427,000	759,600,000	10,000,000	27,980,000	75,960,000	75,960,000	75,960,000	75,960,000	75,960,000	75,960,000	265,860,000			
			20~36층	17	381,173,000	391,427,000	772,600,000	10,000,000	28,630,000	77,260,000	77,260,000	77,260,000	77,260,000	77,260,000	77,260,000	270,410,000			
			2~5층	4	381,173,000	353,427,000	734,600,000	10,000,000	26,730,000	73,460,000	73,460,000	73,460,000	73,460,000	73,460,000	73,460,000	257,110,000			
		102동	6~9층	4	381,173,000	365,427,000	746,600,000	10,000,000	27,330,000	74,660,000	74,660,000	74,660,000	74,660,000	74,660,000	74,660,000	261,310,000			
		6라인	10~19층	9	381,173,000	378,427,000	759,600,000	10,000,000	27,980,000	75,960,000	75,960,000	75,960,000	75,960,000	75,960,000	75,960,000	265,860,000			
00400000	0.40		20~36층	17	381,173,000	386,427,000	767,600,000	10,000,000	28,380,000	76,760,000	76,760,000	76,760,000	76,760,000	76,760,000	76,760,000	268,660,000			
084.9938C	84C		2~5층	4	381,173,000	358,427,000	739,600,000	10,000,000	26,98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258,860,000			
		103동	6~9층	4	381,173,000	371,427,000	752,600,000	10,000,000	27,63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263,410,000			
		1라인	10~19층	9	381,173,000	383,427,000	764,600,000	10,000,000	28,23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267,610,000			
			20~37층	18	381,173,000	391,427,000	772,600,000	10,000,000	28,630,000	77,260,000	77,260,000	77,260,000	77,260,000	77,260,000	77,260,000	270,410,000			
			2~5층	4	381,173,000	349,427,000	730,600,000	10,000,000	26,530,000	73,060,000	73,060,000	73,060,000	73,060,000	73,060,000	73,060,000	255,710,000			
		103동	6~9층	4	381,173,000	361,427,000	742,600,000	10,000,000	27,130,000	74,260,000	74,260,000	74,260,000	74,260,000	74,260,000	74,260,000	259,910,000			
		6라인	10~19층	9	381,173,000	374,427,000	755,600,000	10,000,000	27,78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264,460,000			
			20~37층	18	381,173,000	381,427,000	762,600,000	10,000,000	28,130,000	76,260,000	76,260,000	76,260,000	76,260,000	76,260,000	76,260,000	266,910,000			
			2~5층	4	381,183,000	358,417,000	739,600,000	10,000,000	26,98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258,860,000			
		102동	6~9층	4	381,183,000	371,417,000	752,600,000	10,000,000	27,63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263,410,000			
		2라인	10~19층	9	381,183,000	383,417,000	764,600,000	10,000,000	28,23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267,610,000			
084.9958D	84D		20~36층	17	381,183,000	394,617,000	775,800,000	10,000,000	28,790,000	77,580,000	77,580,000	77,580,000	77,580,000	77,580,000	77,580,000	271,530,000			
		102동	2~5층	4	381,183,000	348,417,000	729,600,000	10,000,000	26,480,000	72,960,000	72,960,000	72,960,000	72,960,000	72,960,000	72,960,000	255,360,000			
		5라인	6~9층	4	381,183,000	361,417,000	742,600,000	10,000,000	27,130,000	74,260,000	74,260,000	74,260,000	74,260,000	74,260,000	74,260,000	259,910,000			

			10~19층	9	381,183,000	379,417,000	760,600,000	10,000,000	28,030,000	76,060,000	76,060,000	76,060,000	76,060,000	76,060,000	76,060,000	266,210,000
			20~36층	17	381,183,000	386,417,000	767,600,000	10,000,000	28,380,000	76,760,000	76,760,000	76,760,000	76,760,000	76,760,000	76,760,000	268,660,000
			2~5층	4	381,183,000	358,417,000	739,600,000	10,000,000	26,98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258,860,000
		103동	6~9층	4	381,183,000	371,417,000	752,600,000	10,000,000	27,63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263,410,000
		2라인	10~19층	9	381,183,000	383,417,000	764,600,000	10,000,000	28,23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267,610,000
			20~37층	18	381,183,000	394,617,000	775,800,000	10,000,000	28,790,000	77,580,000	77,580,000	77,580,000	77,580,000	77,580,000	77,580,000	271,530,000
			2~5층	4	381,183,000	353,417,000	734,600,000	10,000,000	26,730,000	73,460,000	73,460,000	73,460,000	73,460,000	73,460,000	73,460,000	257,110,000
		103동	6~9층	4	381,183,000	366,417,000	747,600,000	10,000,000	27,380,000	74,760,000	74,760,000	74,760,000	74,760,000	74,760,000	74,760,000	261,660,000
		5라인	10~19층	9	381,183,000	379,417,000	760,600,000	10,000,000	28,030,000	76,060,000	76,060,000	76,060,000	76,060,000	76,060,000	76,060,000	266,210,000
			20~37층	18	381,183,000	386,417,000	767,600,000	10,000,000	28,380,000	76,760,000	76,760,000	76,760,000	76,760,000	76,760,000	76,760,000	268,660,000
			2~5층	4	381,181,000	358,419,000	739,600,000	10,000,000	26,98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258,860,000
		102동	6~ 9≷	4	381,181,000	371,419,000	752,600,000	10,000,000	27,63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263,410,000
		3라인	10~19층	9	381,181,000	383,419,000	764,600,000	10,000,000	28,23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267,610,000
084.9951E	84E		20~36충	17	381,181,000	394,619,000	775,800,000	10,000,000	28,790,000	77,580,000	77,580,000	77,580,000	77,580,000	77,580,000	77,580,000	271,530,000
004.9951E	04E		3~5층	3	381,181,000	358,419,000	739,600,000	10,000,000	26,98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258,860,000
		103동	6~9층	4	381,181,000	371,419,000	752,600,000	10,000,000	27,63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263,410,000
		3라인	10~19층	9	381,181,000	383,419,000	764,600,000	10,000,000	28,23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76,460,000	267,610,000
			20~37층	18	381,181,000	391,419,000	772,600,000	10,000,000	28,630,000	77,260,000	77,260,000	77,260,000	77,260,000	77,260,000	77,260,000	270,410,000
084.9951F	84F	103동 3라인	2층	1	381,181,000	358,419,000	739,600,000	10,000,000	26,98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73,960,000	258,860,000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14세대)는 총 공급세대(481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각 동 14층에는 피난안전층이 설치되오니 확인하시고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한국부동산원에서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자체 심의 결과 각 세대의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인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대피공간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 조건 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택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

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 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고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제한)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이 없으며, 대출 불가 사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고. 또한 주택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제한 등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 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영업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 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주체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 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사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 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 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거래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 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Ⅳ 특별공급

구분			1	 મ ી ફ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	법						
공급기준	당첨자발	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빌	표일 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 침	첨자발표일 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수일시 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수일시 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 적	북 처리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 택 요건		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		수 요건을 갖수어야 합니다.(무수택세대	구성원 정의는 "I공통 유의사항"p.1 참조)						
청약통장 자격요건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	사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 일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공급 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성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약 1 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부 1 명하여 6개월이 무별시 및	부지제공자)는 청약통 개월이 경과하고, 지역 부정납입일에 납부한 물 경과하고, 지역별·면조 개월이 경과하고, 지역 부정납입일에 납부한 물	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특 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 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102m² 이	*	만원	4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	하 1,00	 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	0만원								
		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3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		말함							

IV-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9세대

구분				내 용		
대상자		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 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약			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신청구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기관	해당기관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당침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 기관추천 특별경 공급 청약접수□ 기관추천 특별경	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록 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된 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미신청 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 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3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타며 계약 불가).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

IV-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75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거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	개월 경과(지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	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 4)청9	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자)									
	■ ①지역 : 해당지역 7 ■ ②배점	주자 (울산광			마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자)						
당첨자	■ ① 지역 : 해당지역 7		·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당첨자 선정방법	■ ①지역 : 해당지역 7 ■ ②배점	주자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배점기준	돌차) → 7	마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자)						
	■ ①지역 : 해당지역 7 ■ ②배점 배점항목	국자(울산광 총배점)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배점기준	돌차) → 7	마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자)						
	■ ①지역 : 해당지역 7 ■ ②배점 배점항목	국자(울산광 총배점) 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배점기준 기준	주자) → 7 점수	마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자)						
	■ ①지역 : 해당지역 7 ■ ②배점 배점항목	** 하다 ** 하다 ** 100)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배점기준 기준 4명 이상	작수 40	마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자) 비고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세대구성(3)	5	0.411-11-1-8		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71191 1 0 (0)	J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
		[원구조 기념]	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10.1 41.1	0.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
		10년 이상	20	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n z - n 1 - 1 (.)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
무주택기간(4)	20	5번 이상 ~ 10번 비킨	10	· 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
		 1년 이상 ~ 5년 미만	10	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10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울
해당 시·도	1 =		1.0	산광역시)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
		1년 이상 ~ 5년 미만	5	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	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	포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IV-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84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대상자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단계	소득구분	પાંક						
	- 전계	エコーデ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1단계	신생아 우선 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워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16/11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5%)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3단계	(35%)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4단계	(15%)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선정방법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5단계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지	_ 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	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해당지역 거주자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C OT ETT ETTET	TO THE THE TO THE TO THE TENT						
	는 순위		내용						
	순위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지	내용 사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1순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	사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1순위 2순위 ■ ③지역 : 해당지역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	사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1순위 2순위 ■ ③지역 : 해당지역 ■ 자녀기준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사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자)						
	1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	사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자) 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1순위 2순위 ■ ③지역 : 해당지역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 현재 혼인관계인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사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자) 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2.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1순위 2순위 ■ ③지역 : 해당지역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 현재 혼인관계인 - (②순위 판단 시)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된	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자) 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합니다.						
	1순위 2순위 ■ ③지역 : 해당지역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 현재 혼인관계인 - (②순위 판단 시) - (④미성년 자녀수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된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	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자) 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합니다. 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ИJ च	1순위 2순위 ■ ③지역 : 해당지역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 현재 혼인관계인 - (②순위 판단 시) - (④미성년 자녀수 일한 주민등록표등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된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기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사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자) 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1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합니다. 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비고	1순위 2순위 ■ ③지역 : 해당지역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 현재 혼인관계인 - (②순위 판단 시) - (④미성년 자녀수 일한 주민등록표등 - (임신·입양) 입주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된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	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자) 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합니다. 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비고	1순위 2순위 ■ ③지역 : 해당지역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 현재 혼인관계인 - (②순위 판단 시) - (④미성년 자녀수 일한 주민등록표등 - (임신·입양) 입주 의학이 취소될 수 있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된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임습니다.	사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자) 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실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합니다. 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비고	1순위 2순위 ■ ③지역 : 해당지역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 현재 혼인관계인 - (②순위 판단 시) - (④미성년 자녀수 일한 주민등록표등 - (임신·입양) 입주 4 약이 취소될 수 있 * 출산의 경우 출산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된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하다.	사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자) 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한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합니다. 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비고	1순위 2순위 ■ ③지역 : 해당지역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 현재 혼인관계인 - (②순위 판단 시) - (④미성년 자녀수 일한 주민등록표등 - (임신·입양) 입주 약이 취소될 수 있 * 출산의 경우 출산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적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임습니다. 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사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자) 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합니다. 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비고	1순위 2순위 ■ ③지역 : 해당지역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 현재 혼인관계인 - (②순위 판단 시) - (④미성년 자녀수 일한 주민등록표등 - (임신·입양) 입주 약이 취소될 수 있 * 출산의 경우 출산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적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임습니다. 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사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자) 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합니다. 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접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4.10.1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A.I	소득구분		소득금액							
225	नार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우선공급	부부 모두	100% 초과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0,400,411 년	~9,090,100된	~10,550,065편	11,475,950된	12,421,792 년	~15,507,045년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004,510원~	8,248,468원~	8,775,072원~	9,563,283원~	10,351,494원~	11,139,705원~		
신생아일반공급,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8,405,412원~	9,898,161원~	10,530,086원~	11,475,939원~	12,421,793원~	13,367,646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부부 중 한 명만	140% 초과하나,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추첨공급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9,000,314편~	11,547,655편~	12,205,100년~	15,500,590ゼ~	14,492,091편~	15,595,507 현~		
十名 0月	부부 모두	160% 초과하나,	11 207 215 9]-	13,197,548원~	14 040 115 9]-	15 201 252 2	16 562 200 9]	17 000 507 0]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5,197,046편~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구분 부동산 (건물+토지)	금액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내용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토지	* '소시합, 제2소제1오에 따는 소시오시오 가수가 역한합, 제22소에 따는 역한합 이기를 받는 사람이며 역한합 이기등의 사합성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IV-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9세대

구분	प 8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가점항	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	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	족수 35	1명	10	5명	30
Ø⊤8/1	5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③입주자	저축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가입기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百/」	신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기	가입기간 점 수를 합산	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2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	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	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다 첫약저를	존에서 조한저축ㅇㄹ 저화하 겨옥	구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IV-5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42세대

구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ਪ ੀ 8
1 디 케	신생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1인계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E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다게	신생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2인세	(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5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5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 rl-41	초청 교고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9단세	一 名6百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 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선생아 우선공급 (15%) 2단계 선생아 일반공급 (5%) 3단계 우선공급 (35%) 4단계 일반공급 (15%)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비고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 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4.10.1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워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소득금액					
	22국기 판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130% 초과	9,105,863원~	10,723,008원~	11,407,593원~	12,432,268원~	13,456,942원~	14,481,616원~
	일반공급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추첨공급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22///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 । । । । । । । । । । । । । । । । । । 		내용	
			– 건축물: 적용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	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건축물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단, 아리 * 「농지 소유자 * 「초지 소재지 * 공부상 * 종중소 경우로	내 경우는 제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바로 등재된 경우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기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7 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 특별공급 유의사항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방문접수(견본주택)도 가능합니다.
- 입주자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하며, 입주자선정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 처리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및 제55조의 3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등)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		·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 <i>8</i>	네 이상인 분 또는	· 세대주인 미성년자(2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약	· 강)
청약통장 자격요건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여)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	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여 기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즉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 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 이하 1 이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 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약·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약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액이 예치금액 이 백 이상인 분	- 상인 분(전용면적 85	m ² 이하 주택형에 한학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가 뭐야토자이크 시커기	1느컹 거요머거 시키세 퀴	마다 그리처세마 원하기드청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①지역 - 1순위 추첨제: ①지역 - 2순위: ①지역 → ②추	→ ②가점 → ③청약통장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첨} 자 (울산광역시 1년 이상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자)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2순위 : ①지역 → ②추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 ■ ②가점 	→ ②가점 → ③청약통정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첨 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제/추첨제 적용비율	: 가입기간 → ④추첨 → ③추첨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자)	험제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2순위 : ①지역 → ②추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 ■ ②가점 	→ ②가점 → ③청약통정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첨} 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제/추침제 적용비율	: 가입기간 → ④추첨 → ③추첨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 •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2순위 : ①지역 → ②추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 ■ ②가점 	→ ②가점 → ③청약통정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첨} 자 (울산광역시 1년 이상 제 /추첨제 적용비율 전용면적 60㎡	· 가입기간 → ④추첨 → ③추첨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7분} 초과 85㎡ 이하	1년 미만 거주자	가점제	추	- •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2순위 : ①지역 → ②추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	→ ②가점 → ③청약통정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첨} 자 (울산광역시 1년 이상 제 /추첨제 적용비율 전용면적 60㎡	· 가입기간 → ④추첨 → ③추첨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7분} 초과 85㎡ 이하	1년 미만 거주자	가점제 40%	추	-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2순위 : ①지역 → ②추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 - 가점 산정기준(「주택장	→ ②가점 → ③청약통정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점} 자 (울산광역시 1년 이상 제/추첨제 적용비율 전용면적 60m [*] 장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입기간 → ④추첨 → ③추첨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7분} 초과 85m² 이하 의2 나목) 		가점제 40% 가점	추천 60)%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2순위 : ①지역 → ②추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 가점항목	→ ②가점 → ③청약통정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점} 자 (울산광역시 1년 이상 제/추첨제 적용비율 전용면적 60m ² 장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상한	 가입기간 → ④추첨 → ③추첨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7분 초과 85㎡ 이하 의2 나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제 40% 가 점 8년 이상	추천 60 1구분)% 점수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2순위 : ①지역 → ②추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 - 가점 산정기준(「주택장	→ ②가점 → ③청약통정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점} 자 (울산광역시 1년 이상 제/추첨제 적용비율 전용면적 60m [*] 장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입기간 → ④추첨 → ③추첨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구분 초과 85㎡ 이하 의2 나목) 가접구분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점수 0	가점제 40% 가점 8년 이상 -	추천 60 1구분 ~ 9년 미만	0% 점수 18

					,	1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기 족수		35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5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입주자저축		본인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가입기간	17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웹/[전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베구시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을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기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채류 중(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채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 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	의 추천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다.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Ⅵ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인감증명 방식 코아카이 이카즈머리 1톤(요만 · 즈테고그시코 이이요 만 케이토묘 따느 이그이이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정약자가 사필 서명한 취임성(논인서병사결확인서 경의 서명) 1동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제출 생략)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또는 영주증을 말함)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시고증 또는 채외국미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세대원의 청약지 - 세대원 등록방법	-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법: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1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2024.10.30.(수) ~ 2024.11.08(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2024.10.30.(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사전서류제출기간 및 장소

구 분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2024.11.02.(토) ~ 2024.11.06.(수) (5일간, 10:00 ~ 16:00 입장기준)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자격검증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지참 • 1,2순위 및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지참 ※ 당첨자 검수일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원활한 계약체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당사 견본주택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522-1번지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 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 체결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1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세대구성, 주민번호 등 확인을 위해 "전부포함"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등 추가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위조 및 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통(특별,일반) 사전제출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가 확인되어야 하며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서류	투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공급(특별)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코트시즌	0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
공통서류 [특별/일반]	0		신분증, 인감도장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
[국일/일반] (예비입주자	0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포함)	0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신청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포함)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일반공급(가점제) 사전제출 추가서류

	서	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비고
	0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대원 (배우자제외)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포함)	피부양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 "전부포함"로 발급	배구사 로구 구구력사도 또는 그 직계존속을 부양 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0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미혼인 직계비속을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세미국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전부포함"으로 발급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전부포함"으로 발급	
		0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청약자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	
		0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합산한 경우
		0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합산한 경우
해외 근무자	0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제출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불가 	
(단신부임)	0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동반 체류시 단신부임 인정 불가) -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0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되지 않음

■ 특별공급 사전제출서류 (추가서류)

구분		류유형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011 8 2 1 1 1	크日기간	구기시표 세월대 6 중 표구작동
기관추천 특별공급		0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0	주민등록표초본(전부포함)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0	주민등록표등본(전부포함)	직계비속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 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다자녀 가구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청약신청자가 만19세 이전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과 해당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특별공급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0		청약 가점산정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노부모	0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대원 (배우자제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준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부포함)	피부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전부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피부양 직계비속 직접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배우자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존인	혼인신고일 확인
	0		재직증명서	본인 및 소득 발생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발급처 : 해당 직장 / 세무서) /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시 회사직인날인필수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표1참조) ※ 단,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0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포함)	직계존속	가구원수 산정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0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부동산가액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	본인 및 세대원	부동산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 및 부속토지의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 토지 공시지가 등 부동산 가액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
		0	부동산 자산관련 확약서	본인 및 세대원	부동산 자산가액으로 자격을 검증 받을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 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만19세이상 세대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0		자격요건 확인서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혼인사실여부확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0		재직증명서	본인 및 소득 발생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발급처 : 해당 직장 / 세무서) /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시 회사직인날인필수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세)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0		청약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사실 증빙서류 (표2참고)	본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소득세 납부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만 1년 기간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를 포함) 서류 (표2참고) ① 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원, 납부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소득금액증명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표1참조)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세대구성원 포함)
***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0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부동산가액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	본인 및 세대원	부동산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 및 부속토지의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 토지 공시지가 등 부동산 가액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
		0	부동산 자산보유 확약서	본인 및 세대원	부동산 자산가액으로 자격을 검증 받을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신청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자로 만 18세 이상 미혼인 자녀로 자격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전부포함)	직계존속	가구원수 산정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만19세이상 세대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0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3자 대리인	0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신청시	0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110	0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함)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서류 외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1>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입증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해당하는 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근로계약서(직인날인) 제출 ※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 계산하여 추정함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② 전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장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 ② 세무서
자영업자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또는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② 전년도 재무재표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①, ③ 세무서 / ②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직인날인 급여명세표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① 세무서,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Ĕ	- - - - - - - - - - - - - - - - - - -	① 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직인날인 된 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프리랜서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신고 미대상자에 한함) / ② 위촉증명서 및 해촉증명서	① 세무서 / ②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②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① 견본주택비치 / ② 세무서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는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 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표2>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입증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직인날인) 반근로자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직인날인)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근로계약서(직인날인) 제출 ※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 계산하여 추정함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② 전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장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 ② 세무서		
자영업자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또는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② 전년도 재무재표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세무서 / ② 해당직장		
	보혐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작인날인 급여명세표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① 세무서,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Ē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직인날인 된 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프리랜서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신고 미대상자에 한함) / ② 위촉증명서 및 해촉증명서	① 세무서 / ②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②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① 견본주택비치 / ② 세무서		

■ <표3>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5개년도 이상이라 함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②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5개년)	① 해당직장 / ② 세무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② 소득금액증명 (5개년) / ③ 납부내역증명 / ④ 납세증명서 ※ 추가첨부 - 서류 제출시 납부사실증명상 납부내역 없음일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추가 제출 필요 (세액 발생 해당년도 전부 포함)	①, ②, ③, ④ 세무서
농업인 5개년도 확인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개년도 확인)	① 관할 읍면동사무소

-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는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 모든 제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구 분	서 · 필수	류유형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부적격 통보를		0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해당 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받은 자		0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해당 주택에		0	소형ㆍ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포함) 등
대한 소명자료) 		0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Ⅶ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체결 기간	계약 체결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일시: 2024.11.11.(월)~2024.11.13.(수)	리고, 린다 레뷔코에 (스마카라다 크고 스키트 500 4메리)
정점사 세국 세설	3일간 (10:00~17:00)	장소: 당사 견본주택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522-1번지)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추후 별도 통보 예정	※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 분		서 필수	류유형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자격검증 미제출자	0		자격검증서류 (사전서류미제출자)	_	상기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추가 개별통지 서류	_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공통		0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_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특별/ 자격검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일반공급)	사전서류			(사전서류 제출 시 제출한 경우 제외)	는 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 불가함)
	제출자	세출자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서명으로 가능하나 대리인 계약 불가하며 인감증명서
				인심도성		인감도장 대조날인 확인
		0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대리인 계약시 추가 사항 (본인 외 모두 제 3자로 간주함)		0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 불가
		0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0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 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 를 제출하며(사본 불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 대금 납부계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BNK부산은행	101-2082-2459-06	㈜동원개발, ㈜세명종합개발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502호 홍길동 : 1010502홍길동 103동 1302호 강동원 : 1031302강동원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하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 신청 및 계약체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 에 대해서는 2021.05.28. 개정 및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거하여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 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②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

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인지세법' 제 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체결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수입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시에는 반드시 납부한 수입인지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분양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는 계약자와 사업주체가 연대하여 균등 부담하며, 기타 부동산거래 및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빛공해(단지 내 도로 설치로 인한 자동차 전조등 등을 포함함),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 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 의 사정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지역지정, 중도금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다주택 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본 주택 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 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 주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 부하되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 상 계약해제 조 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 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선납할인 및 연체 안내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실시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지정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진행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점검항목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가구공사 등 상태 확인

■ **입주예정월** : 2028년 1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 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및 기타 등기내용 행정 절차 완료 시점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X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	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주택처분 주택처분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자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자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완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제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하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 다음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입자인으로서 보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자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다. 구기선광현적의 65세합미터를 소파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 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 하여야 한다.
- 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 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②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5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2)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VIII

추가선택품목 및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의 선택사항으로 추가 선택 품목의 금액 및 물품 등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임의 결정한 금액이며, 분양승인대상(분양가상한제 비대상)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구분(공고상 타입)	84A	84B	84C	84D	84E(F)	비고
발코니 확장금액	24,800,000	23,840,000	24,980,000	23,630,000	23,8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BNK부산은행	101-2082-2464-06	㈜동원개발, ㈜세명종합개발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502호 홍길동 : 1010502홍길동 103동 1302호 강동원 : 1031302강동원

- •발코니 확장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예시 102동 1502호 계약자 → '1021502홍길동' / 203동 702호 계약자 → '2030702홍길동')•상기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사업주체와 계약자 각각 납부)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해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관련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고,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관련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옵션 선택시),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인접 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 활용도 가 저하될 수 있고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자가 발코니확장 및 기본 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 할 경우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행사(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해 천장돌출, 우물천정 디자인 변경, 커튼박스 깊이 축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안방(침실1) 발코니 내측 부위의 경우 단창이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안방(침실1)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고 이에 따른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선택시에만 선택 가능한 유상옵션품목입니다.)

(1)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291

구분	전평형		전평형		
. –	거실+안방(침실1)		거실+안방(침실1)+침실2,3		
시스템에어컨	4,600,	000	7,10	00,000	
비고	거실 : 18평, 안병 (실외기 :		거실 : 18평, 안방(침실1): 8평, 침실2,3 : 5평 x 2 (실외기 5마력)		
	제조사명	18평	8평	5평	
모델명	삼성전자	AJ072BN1PBC1 + PC1BWSK3NW	AJ032BN1PBC1 + PC1NWSK3NW	AJ020BN1PBC1 + PC1NWSK3NW	
	1 약		29}		
구분	 전평		전평형		
, =	거실+안방	(침실1)	거실+안방(침실1)+침실2,3		
시스템에어컨 + 공기청정형	5,100,000		8,300,000		
비고	거실 : 18평, 안방(침실1) : 8평 (실외기 : 4마력)		거실 : 18평, 안방(침실1): 8평, 침실2,3 : 5평 x 2 (실외기 5마력)		
	제조사명 18평		8평	5평	
모델명	삼성전자	AJ072BN1PBC1 + PC1BWCK3NW	AJ032BN1PBC1 + PC1NWCK3NW	AJ020BN1PBC1 + PC1NWCK3NW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동안 추가선택품목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납부일정 및 금액은 계약서 상 명시 예정임.

1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의사항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에어컨 냉매배관만 시공[안방(침실1), 거실]되며, 옵션 선택시 입주자 부담으로 실외기 및 실내기를 설치하여야 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실외기는 실외기실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고,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불가함.
- •상기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하며, 추가선택품목은 확장 시에만 선택이 가능함.

(2) 현관중문

단위 : 원, VAT포함]

구분(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비고
저교허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중문(수동)]	1,300,000	
전평형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중문(자동)]	2,210,000	

-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역은 계약 체결 시 배포되는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중문 미선택시 시공되지 않음.

(3)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품목	모델명	공급금액	비고
전평형	삼성전자 비스포크 + 키큰장	삼성전자 - 냉장 : RR40C7995AP 냉동 : RZ34C7965AP 김치 : RQ34C7945AP	5,250,000	
ପଟିଟି	LG전자 오브제 + 키큰장	LG전자 - 냉장 : BC1L1AA1 냉동 : BC1F1AA 김치 : BC1K1AA1	4,610,000	
저대칭	삼성전자 식기세척기	DW60T7065SS(삼성전자)	1,100,000	
전평형	LG전자 식기세척기	DUB22SB(엘지전자)	1,250,000	
전평형	복합 환풍기	휴젠뜨2	1,000,000	환기, 무드조명, 제습(건조) 온풍가능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역은 계약 체결 시 배포되는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역은 계약 체결 시 배포되는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바닥재(타일 및 원목 마루)

[단위 : 원, VAT포함]

구분(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비고
84A		2,240,000	
84B	포세린타일(거실 + 주방)	2,060,000	
84C	600*600 [안방(침실1) + 침실2 + 침실3 + 드레스룸은 강마루로 시공 됩니다]	2,220,000	미선택시 기본 강마루
84D		2,100,000	716 6-17
84E(F)		2,130,000	
84A		1,630,000	
84B		1,580,000	
84C	원목 마루 [거실 + 주방 + 안방(침실1) + 침실2 + 침실3 + 드레스룸]	1,620,000	미선택시 기본 강마루
84D		1,540,000	716 677
84E(F)		1,510,000	

•바닥재의 경우 포세린타일과 원목마루는 중복선택이 불가능오니 옵션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역은 계약 체결 시 배포되는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마감재 스타일업

[단위 : 원, VAT포함]

구분(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비고
84A	< 거실마감재 스타일업 >	2,690,000	
84B	거실아트월[박판타일(1200*1200)]	3,580,000	
84C	벽체 간접조명(200*100) 우물 천장 간접조명(100*100)	2,670,000	
84D	부글 단중 단합도 ((100/100) 복도(주방) 벽시트 판넬	3,390,000	
84E(F)	(84B, 84E타입만 해당 박판타일 일부)	3,630,000	

구분(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비고
84A		9,830,000	
84B	< 주방마감재 스타일업 A >	10,990,000	 주방마감재
84C	한샘 고급형 주방가구	10,240,000	스타일업 C와
84D	주방 상판 세라믹 타일 주방 벽체 세라믹 타일	9,990,000	동시선택 불가
84E(F)		10,480,000	
구분(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비고
84A	(Karalatai y Lioloj D)	2,520,000	
84B	< 주방마감재 스타일업 B > 주방 라인 조명	1,070,000	
84C	주방 우물 천장 (루버+조명) [84B, 84E(F)타입만 해당]	2,310,000	
84D	주방 우물 천장 (루버+조명+간접조명) (84A, 84C, 84D타입만 해당)	1,260,000	
84E(F)	주방벽체 박판타일(84A, 84C타입만 해당)	1,150,000	
구분(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비고
84A		3,540,000	
84B	< 주방마감재 스타일업 C >	3,090,000	 주방마감재
84C		3,720,000	스타일업 A와
84D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3,710,000	동시선택 불가
84E(F)		2,970,000	
구분(주택형)	품목		비고
84A		3,630,000	'
84B		3,640,000	
84C	< 드레스룸마감재 스타일업 >	3,650,000	
84D	벽판넬형 시스템 선반&조명	2,970,000	
84E(F)		2,190,000	
구분(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비고
84A		2,460,000	,
84B	< 침실2,3마감재 스타일업 >	1,510,000	
84C	침실2,3 간벽 유리 미서기문	2,460,000	
84D	- 팬트리(붙박이장) - 복도장식장(84A, 84C타입만 해당)	1,480,000	
84E(F)	국上경국정(OMAN, OMC의 B린 예정)	1,640,000	

- •주방상판 미선택시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됨.
- •주방마감재 스타일업의 경우 A와 C는 중복선택이 불가능오니 옵션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부부욕실 비데일체형 양변기

[단위 : 원, VAT포함]

구분(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비고
전타입	투피스양변기+비데(일체형)	1,220,000	

(7)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단위 : 원, VAT포함]

구분(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비고
전타입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2,100,000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옵션 품목 납부계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BNK부산은행	101-2082-2468-01	㈜동원개발, ㈜세명종합개발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502호 홍길동 : 1010502홍길동 103동 1302호 강동원 : 1031302강동원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아파트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냉장고, 중문, 하이브리드 전기쿡탑 등 옵션품목)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 결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함.
- •추가 선택품목을 시공함에 따라 선택품목 설치위치의 단위세대 마감재의 변경 및 미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미시공 설치 및 마감재 변경을 요청 할 수 없음.
- •상기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은 확장시에만 선택 가능함.
-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추가선택품목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납부일정 및 금액은 계약서 상 명시예정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IX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통사항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당 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2020-건축허가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을 득한 사업으로 관계법령이 인정하는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상수도 관로의 유지관리 및 검침업무를 위하여 주·부출입구 부근에 계량기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정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분양 홈페이지(https://www.dongwonapt.co.kr/mugeo/)를 참고하시기 바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사이버 포함)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시 입주지원센터는 입주기간 동안 운영되며, 운영기간 중 수도 및 전기요금 등은 관리비로 부가 될 수 있음.
- 보도 설치 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 기타 관련법률 및 규정,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진출입 등을 위해 조성되는 전용 및 완화차로 확보구간의 경우 기존 도로와 연계된 도로 구배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설되는 도로 및 보도, 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보도 포장 재질 및 패턴, 기타 도로시설물 등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해당 지방교육청이나 인허가청의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의 없이 동의함.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m²)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m²) ÷ 3.3058]
- 면적표현은 소수점 넷째 자리 제곱미터(m²)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 면적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함.
- 주택 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이에 따라 면적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 등의 합계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 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중 벽체 공유면적을 제외한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로비 등)은 해당 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은 해당 세대 또는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수별 형태 및 면적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주택형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같은 주택형일지라도 세대별 등기면적은 상이할 수 있음. (이에 따른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은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대지면적은 지구단위 및 사업시행인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과에 의한 지적분할측량결과로 산출된 것이며, 준공 후 시행하는 지적확정 측량시 면적이 감소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금액 정산은 없음.
- 배분된 대지지분과 별도로 단지 내 일부 토지는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주택사업승인) 인허가 결과에 따른 조건 및 제한 사항에 따라 실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건축심의사항 이행 또는 사업시행인가(주택사업승인) 인허가 결과 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등이 관련 법령에 의거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할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될 수 있음.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형태 및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배치 구조,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차단기 및 문주, 드라이에어리어(DA),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정 당첨자의 경우 선의에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및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 한 날로부터 7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됨을 확인하여야 함. (계약체결 불가)
-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통해 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준공 입주 후 기타전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불법 확장 등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단위세대 내부의 불법 구조 변경 및 해당 세대 공용부의 불법 전용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 공사 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되며,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본 시공 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 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 사항임)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 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절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 미포함 되어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마트스위치 등의 제품사양 및 디자인,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및 바닥 배수구(입상관 포함)의 제품사양,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 스위치의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향후 아파트 내외관, 색채, 조경, 기타 시설물의 디자인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미 건립세대에 대하여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와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 카달로그 및 단위세대 모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 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단지 조경 식재 및 시설물, 포장 계획은 단지 모형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위치도에 표기된 사항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위치도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음.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인허가청의 고유 마을명칭), 동 번호, 외벽 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 2. 조경 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옥외 시설물 등 그 밖의 시설물의 디자인, 위치, 개소 및 경관계획(외관, 외부색채, 그래픽, 옥외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색채계획 등
 -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용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용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하기로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문상의 문구 중 사업주체의 고의가 아닌 착오,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일부 표기가 잘못될 수 있으므로,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재확인 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홍보물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지하철, 도로, 공공용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비실,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휘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이 있음.

- 단지 내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의 체육시설은 입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입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설치되며,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은 입주민 공동 부담임.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창)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써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다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 조망, 기타 제반 환경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운동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설비환기구)등의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품창고,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배수설비,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시설물의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 위치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를 통해 위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함.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함.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명기구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는 다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는 전망을 일부 가릴 수 있음.
- 각 동 저층세대는 지상주차장, 단지 내 보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각 동 필로티 내에는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행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단지 내부 도로는 단지내 레벨계획으로 인한 단차이가 있어 일부 조경석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주변과 레벨차이로 인해 단차가 발생할 경우, 본 공사시 마감계획은 "조경석, 토목옹벽, 건축벽체"등으로 선택 시공할 수 있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차 충전설비, 공용부 전기/통신시설물, 단지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공용부환기설비, 공용부 동파방지 열선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외벽은 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일부 개구부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각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울산시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본 아파트 시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조경석 쌓기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위치·재질 등

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 및 침실 선택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한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음.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는 향후 사업시행자 및 인허가 관청의 일정에 따라 각 도로의 개발 및 개통 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지연, 변경(도로폭,위치,레벨 등)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입주 시기와 도시계획도로의 개통 시기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관청 문의하기 바람.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해 다수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고 청소차량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종량제 기기 및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주변에 악취 및 수거 과정에서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청소차량 진입 및 수집 운반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 용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 시 분리 수거대가 추가 설치될 수 있음.
-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주거동 지하에 단지 오수처리를 위한 정화조가 설치되는 분류식 지역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이며, 본 시설의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작업시 소음 및 냄새 등으로 인접세대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의 옥상 또는 외부로 돌출된 배기펜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소음 및 미관상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옥탑, 지붕, 외벽 등에 외부로 노출되는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 측뢰, 급배기시설, 실외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빛의 산란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발코니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람.
-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아파트의 명칭,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입주 시 본 공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하나의 단지로 복리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임.
- 본 아파트는 주변소음 및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입주자 불편과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방지 조치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되나, 일부 세대별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음으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외부를 둘러싼(대지소유 : 아파트 입주민, 이용: 공공에 이용토록 함)도로에 대하여는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보도)이며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 단지 내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일부 도로 및 저층세대는 열기 및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설계관련 및 기타유의사항[아래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변경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부여건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쓰레기분리수거장 및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차도 혼합 블록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차량 운행 및 보행 시 소음 및 이용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비상차로포함)의 차량통행으로 인해 저층부세대의 주거환경에 일부 간섭이 생길 수 있으며, 지하 주차장의 경우 택배 및 통학차량의 출입 등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에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내 차량통행로 및 차단기 계획은 이용 상의 편의 개선을 위해 해당 선형 및 설치위치, 개수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동에 대한 주거환경간섭의 정도에 변화

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주거동의 설비공간과 연결된 각종 배선, 배관 및 조명, 소방설비, 환기설비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통행 가능한 높이를 감안하여 설치되므로 해당 높이 이상 의 차량이 출입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부대복리시설 및 주택의 환기 및 소방기능을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면 및 필로티 등에 설치되며 일부 인접세대는 해당 시설 작동 시 소음 및 냄새 등의 침해 및 세대 환기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및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계획이 상이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계획은 동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아 일부 동은 이용상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필로티의 상부 캐노피 설치 위치(개수)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 재질,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 및 시공성 개선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 임의로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식재 등의 위치는 입체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 유무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단, 식재 대상,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 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외부의 조경석 쌓기, 옹벽 등의 위치 및 형태 디자인은 준공 접수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인접 주민들의 민원 및 기타 사유로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및 디자인은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다지 각 부분의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 단지 출입구의 문주 등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단지경계 및 내부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 이 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위치 및 층에 따라 입면재료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각 코어별 엘리베이터의 개수, 속도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 동 코어별 계단실의 창호는 해당 층의 세대와 인접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개폐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시공됨.
- 각 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창호는 관련 법령이 허용한 범위에서 개폐 가능한 창호가 설치되며 피난 시 제연을 위하여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 아파트 저층 및 지하층 로비 평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어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 마감사양 등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실제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본 단지의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와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 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평면 계획상 일부 세대 침실 등의 공간은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하여 운행진동/소음이 세대 내부로 전해질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본 단지 지상과 지하 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구조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별도로 구획되어 설치될 예정이나, 아파트 단지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이용 차량동선과 공동으로 사용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면적 과다, 공용시설물(진출입구 등) 공동사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관리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 관련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함.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함.
-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가)의 지하주차장 출입구(통로, 램프)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가) 입주(계약)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가)의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통로(지하 통로 및 램프 등 포함)를 시설별로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가) 대지지분, 계약면적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함.(시설별로 지분 및 소유를 주장하거나 출입구(통로, 램프) 통제 및 차단하는 등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모든 입주자가 지하주차장 출입구(통로, 램프)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 본 단지 주차대수는 전체 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합산)의 합산 대수로 각 동 별 주차대수를 인정하지 않음.
- 본 단지의 지상주차장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입주자와 상가입주자 및 방문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각 동별, 세대별로 구획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주차 진입 및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로 설계되어 있어 택배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며, 택배차량은 지상으로 진입함을 인지하시기 바 라며, 추후 이를 사유로 해당 관청 및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 계약 해제(해지)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차대수를 임의로 산정할 수 없으며 실제 이용에 있어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 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따라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지상주차장은 장애인주차, 경형주차,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주차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 및 대수는 변경 될 수 있음.(주차계획상 동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각 층별로 주거동 코어와 인접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각 코어별 배치 대수는 코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지하·지상주차장의 주차구획 규격은 주차장법에 의한 법적기준에 의한 규격이며, 위치에 따라 기둥, 벽체 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는 향후 지하층 배수기능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추가가 될 경우, 이에 따른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등은 공용 전기료로 부과됨.
- 무인택배시스템은 각동에 설치 예정이며, 설치위치 및 개소, 택배함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설치위치에 따른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출입구에 설치된 우편물수취함의 위치, 개소,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단차이 및 주변 레벨에 따라 조경석 쌓기 및 옹벽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와 외부도로사이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및 각종 시설물 (DA,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 보관소등) 및 마감재등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모형, CG에 표현된 주변현황(도로 및 주변건물 등)은 이미지로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모형에 표현된 단지경계선 외부공간[녹지, 주변도로]의 형태 및 레벨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음.
- 입주 이후 단지 주변의 도로에 의해 소음 및 분진, 진동, 교통체증 및 차량 빛 공해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이후 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공사는 미관,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비의 구조 및 형태, 설치 위치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자연환경 및 입주자의 유지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공 급을 위한 한전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맨홀, 통신맨홀 등의 위 치와 외부 배관 인입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 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해 협의 하였음. 당 사업자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중계기 및 옥외안테나, 중계장치, 접지단자 등) 협의 비대상(미설치)이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옥탑부위에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드라이에어리어(D/A)에 의한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시 안전매트 구간 계획에 의하여 조경 식재의 종류, 위치, 보도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및 대지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하며 주차는 단지 내에 바닥 색상으로 구분되며(근생 주차 24대 설치)되며, 이에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건축 및 설비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지 주거여건도 함께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점시설에 따라 소음, 냄새, 빛공해 등으로 인접 주거동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근생의 형태(높이 및 크기, 면적 등)는 고시된 도로선형에 준하여 설계된 것으로, 추후 근생 형태 및 주변현황은 분양 자료와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을 위한 피트공간으로 인해 실내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에 수납공간이 협소 할 수 있으며 부분 수정될 수 있음. 온수분배기 설치위치의 가구 뒷판과 하부 바닥마감은 시 공되지 않음.
- 주차관제시스템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서비스 업데이트와 서비스 제공(외부 제어 및 연동)을 위하여, 단지별 선별 적용되는 시스템들(예: 원패스, 무인택배, 홈넷 무인경비설비 등)의 전문 장비는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어야 함. 해당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AI 서비스 전용회선 포함)
- 전용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중 일부는 기간사업자의 연동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기간사업자(통신사, 포털사, 가전사 등)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경(유료/무료/서비스 내용) 될 수 있음.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 및 안전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보일러 연도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 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 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빛공해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에 의한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동주택은 공사 중 천재지변, 지하암반 출현,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정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타입에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계약자, 분양권 계약자 및 입주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따라 초등학생 및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기존 신복초 및 무거학교군(삼호중, 옥현중, 문수중, 무거중, 장검중), 남부학교군으로 배치기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배치계획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구조개선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세대/디자인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급의 제품으로 시공됨.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몰딩, 벽지, 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가스배관, 환기배관,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구조형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 단위세대에는 별도의 대피공간이 설치되며 측세대, 중간세대, 해당 층, 위치별로 내부 치수는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외부 창호 및 출입문 등 일부 변경 되어질 수 있음.
- 단위세대에는 별도의 실외기실이 있으며, 시공 시 그릴창 또는 난간대 및 출입문의 개폐방향 등 일부 변경 되어질 수 있고 실외기실 그릴은 수동형 제품임.
-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타일,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동일한 컨셉이라도(미건립타입)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 주방가구의 구성 및 제공품은 타입별 주방 크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수건걸이 등 액세서리의 크기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및 발코니 배수구 및 수전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형태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으로 문틀이 미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 시 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본 공사 시 방화문 프레임 두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관 바닥의 레벨이 낮아질 수 있음.
-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 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욕실 등 다운부위는 실시공시 바닥 구배 등으로 인해 위치별로 단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견본주택과 단 높이 차이가 있으며 슬리퍼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할 예정임.
- 입주자 선택에 의해 발코니 확장, 비확장에 따라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개별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는 중도금대출 및 분양 옵션 잔금을 완납 후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실 공사 시 사용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됨.
- 동일 평면 타입이라도 해당 층·호(측세대 여부 등)에 따라 외부창호, 단열재 시공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건물외부, 엘리베이터 홀, 복도, 주현관, 지하주차장, 지하층 홀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 내역은 팜플렛 및 마감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D는 옥상 배수 등 공용 기능을 위한 설비가 함께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 등이 내부로 전달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기, 스위치, 일괄소등 스위치, 온도조절기, 보일러, 전열교환기, 홈네트워크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공급세대의 마감재 리스트 중 미표기 사항, 외부 환경디자인 등 카다로그에 미표기 사항은 사업시행인가(사업승인변경) 최종도서에 따라 시공함.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를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감지기, 유도등은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 시 변경, 미설치, 추가설치 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발코니, 욕실, 현관 등 방수 및 재료분리로 인하여 해당부위의 바닥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슬리퍼 등을 사용할 경우 발이 걸릴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 시 마감재 설 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 창호 설치로 인하여 미관이(방충망 색상, 돌출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으며, 방충망 돌출로 인해 공간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주방 및 거실의 조명개수와 사이즈는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높이는 천장 설비에 따라 실별로 상이할 수 있음. 가구 내부의 액세서리는 타입 별로 사이즈 및 제공여부가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또는 단창 등으로 설치되나, 향후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규격(용량)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거울은 세제 등 생활용품(알카리성 화학성분)의 사용상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변색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수량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구조변경에 따른 옵션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등의 타입, 배치 및 설치수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방가구에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발코니에 배수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은 외부로 노출되어 세대 내부에서 보일 수 있으며, 배수 기능으로 인한 소음 등이 세대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상부 세대 비확장 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튼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동일한 평면이라도 각 동 라인별로 실내 폭 치수가 상이하니 동 평면도를 충분히 확인하고 인지하여주시기 바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최종 사업시행인가(사업승인) 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실외기실, 앞발코니, 보조주방 등)의 내부 폭은 같은 타입이라도 중간세대 + 측세대 + 꺾인세대 등의 동 조합에 따라 안목치수가 일부 법적인 오차 내에서 달라질 수 있음.
- 당 현장은 주방 벽 및 욕실 벽에 타일로 마감되며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관련 기준에 따라 노출된 안방(침실1)내부 벽 또는 침실내부 벽 등에 설치되므로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수도, 가스,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대피공간 창호는 열리는 방향에 따라 해당 창호의 프레임 두께 및 손잡이 등 부속품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제공/전시품목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 및 각종 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교체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가구류(거실장, 침대, 테이블,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벽체장식판넬 등), 전시조명등은 견본주택 연출을 위한 전시품목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 가구도어에 부착된 글씨 안내 문구는 견본주택 연출용으로 본 공사 시 부착되지 않음.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품은 견본주택용의 냉난방겸용 제품이며, 추후 본공사 시 설치 예정 모델과 상이할 수 있음.

■ 환경권 및 외부환경 디자인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등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과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각 세대의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 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를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외부 형태 (도로, 녹지, 주변상황 등)은 실시계획인가 변경,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준공시 모형, CG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코너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충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 조망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제연급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주차램프, 문주 등의 설치로 소음이나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각동의 지하층에는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발생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D/A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쓰레기분리시설)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설치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 해당시설의 위치 및 내부 계획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는 세대 화장실 등의 환기구가 설치되며 최상층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지붕, 외벽 등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그늘, 빛의 산란, 전자파 등으로 인한 영향 등이 있을 수 있음.
- 다지 주출입구에 위치한 일부 동은 차량 및 보행자의 단지 출입에 의한 소음, 전조등에 의한 빛 간섭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문주에 근접한 동은 거실, 침실, 주방, 다용도실 등의 창호에서 문주로 인한 조망, 채광, 소음 등이 불리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음.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 및 사인물 등이 세대 외벽에 일부 설치되며, 인접 세대는 해당 시설물의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주거동, 부대복리시설, 동현관, 지하출입구, 문주, 조경, 각종 지상 시설물(환기구, 난간, 쓰레기보관소 등)등 모든 시공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형태 및 크기, 설치 위치, 수량 등은 그 디 자인 의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고,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디자인 및 사용성, 안전성 개선 등의 각종 사유로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시공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 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의 색채계획은 추후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벽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함.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 및 사인물 등이 세대 외벽에 일부 설치되며, 인접 세대는 해당 시설물의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등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향후 관련법규 변동 및 특화디자인 컨셉에 따라 일부 재질 및 적용부위,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의 경관, 색채 디자인은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교통통합심의를 거쳐 계획되었으며, 향후 필요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승인)변경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 형태, 면적은 인허가 및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이후 조경관련 유지관리공사의 시행주체는 입주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 또는 관리사무소에 있으며 인수인계시 드리는 유지관리계획서 및 지침서를 참고하여 관리하시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공간 내 실면적의 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입주 시 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창호 및 문의 위치, 개수, 형태, 재질, 색상 등 세부 사항들은 향후 성능개선 및 이용성 향상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마감재 및 그래픽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음.
-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위치, 크기,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본 단지의 체육시설은 실외 주민운동시설과 실내 운동시설(휘트니스, G.X 등)로 구분되어 설치될 예정으로, 향후 세부 설치 시설물의 수량과 형상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동법시행령 5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됨.
- 하자보수 절차는「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홍보물

- 당 사업지와 관련하여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사이버 견본주택, 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 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람.

■ 명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본 아파트에 사용된 아파트 브랜드 및 네이밍(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 모든 부동산 계약 시「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 하 거나 서류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분양계약자는 예비입주자 모임(카페, 동호회 등)을 결성하여 분양계약서 및 견본주택에 정하지 아니한 추가 공사, 계약자들의 개인정보 요구, 하도급 업체 선정요구(이권개입 등), 입주지정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AI 아파트 서비스는 KT에서 제공합니다. "KT GiGA Genie 홈 IoT" 앱을 통하여 AI 아파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음. (스마트폰 통신사 무관)
- AI 아파트 서비스는 입주 지정기간 종료 시점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상 서비스 종료 기간 후에는 KT 요금 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 될 수 있음.
- AI 아파트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입주 시 KT에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무상 제공 기간 종료 시점에 자동 해지됨.
- AI 아파트 서비스 내용은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상품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IoT 가전 기기는 별도 구매하여야 하며, IoT 가전 연동 및 Home to Car 서비스는 KT 연동 가능 모델에 한하여 제공됨.

- TV/음악 서비스는 별도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됨. (Olleh TV, 지니뮤직)
- 입주예정월 3개월 전에 입주예정월 연기를 사전에 안내할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지체상금 등을 청구하거나 입주시기 연기(지연)에 따른 민원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 기 바람.

X 기타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적용)

구 분	적용여부	비고
고기밀 창호	적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만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 기타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능력(MMI등급)	VII-0.192g

※ 내진능력: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등급, I~VID으로 표기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건축감리	소방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감리
회 사 명	㈜휴먼아키피아종합건축사사무소	㈜중앙기술단	㈜수양엔지니어링	㈜중앙기술단
감리금액	2,585,057,860	448,800,000	691,021,000	70,4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단위 :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2312024-101-0001000 호	이천삼백팔십억삼천일백삼십만원정 (₩238,031,3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지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 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 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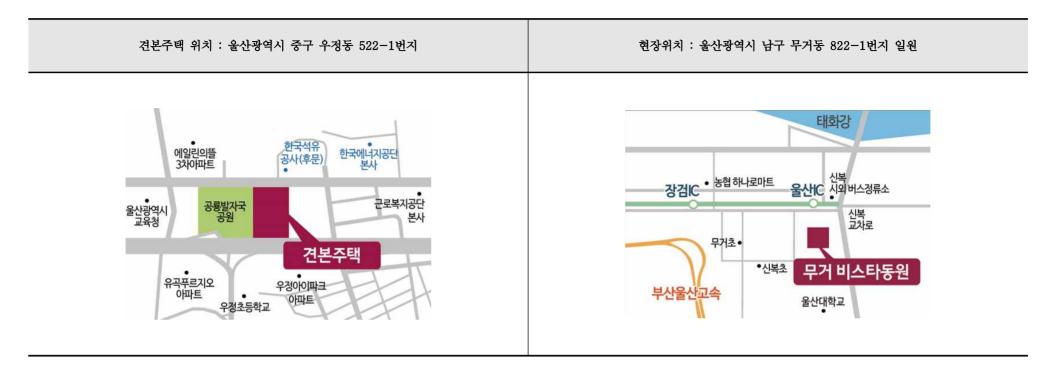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ই	㈜세명종합개발	㈜동원개발	㈜동원개발
주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54, 상가동 6층 603호 (민락동, 센텀비스타동원 1차)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54, 상가동 9층 (민락동, 센텀비스타동원 1차)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54, 상가동 9층 (민락동, 센텀비스타동원 1차)
법역	인등록번호	234111-0043673	180111-0029438	180111-0029438

■ 견본주택 및 현장위치



- 홈페이지 주소: "무거 비스타동원" 홈페이지 (https://www.dongwonapt.co.kr/mugeo/)
- 분양문의 : ☎ 1566-930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하자 등에 따른 입주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 및 계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은 최근까지('24.10.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반영된 참고자료로서, 지역과 주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